

대구지방법원 2020. 9. 9 선고 2020나30638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]

---

### 재판경과

대구지방법원 2020. 9. 9 선고 2020나306387 판결

대구지방법원 2020. 3. 20 선고 2019가단132015 판결

### 전문

원고, 항소인A 주식회사

피고, 피항소인B

변론종결 2020. 7. 22.

판결 선고 2020. 9. 9.

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. 3. 20. 선고 2019가단132015 판결

### 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로부터 60,965,4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

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.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### 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최미복

판사이준규

판사정인섭

별지